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11. 24
- 나. 회부일자 : 2003.11. 24
-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3.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 계 중 의원)

3. 제안이유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행정의 전산화와 사무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반장의 기능이 미약하여 통·반의 조직은 운영하되, 반장의 위촉제도를 동의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의 규정으로 하고 통장의 위촉 기준을 강화하여 여러 주민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동에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장 위촉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통장은 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안 제5조2의제2항)
-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5조2의제3항)
- 자구수정(안 제7조제3항)
- 제10조를 삭제함.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신 덕 찬)

- 동에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장 위촉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통장은 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함(안 제5조의2제2항)
-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안 제5조의2제3항의 경우 서구는 도·농 복합구로(유덕동, 서창동) 통의 세대원수 및 인구수를 감안할 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장 위촉심의위원회) ①동에는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추천을 받은 자의 주민지도력 등을 심의할 통장 위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지역구의원, 동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반장 위촉) ①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통에 거주하는 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통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5월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스스로 사의를 원하는 경우
5. 통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6. 기타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활동이 극히 불량하여 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⑤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의 직접 선출을 거쳐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통·반적부관리”를 “통·반 현황관리”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새마을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통·반장의 신분예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위촉된 지 2년 미만인)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개시한다.
 - ③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민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민 수의 1/5이상의 주민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확정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통에는 통장, 반장을 둔다.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p> <p>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p> <p>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p> <p>③통·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p> <p style="margin-top: 20px;">(신설)</p>	<p>제3조(확정기준) ----- 자연마을 -----.</p> <p>제5조(통장 위촉심의위원회) ①동에는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추천을 받은 자의 주민지동력 등을 심의할 통장 위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은 지역구의원, 동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p> <p>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p> <p>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의2(통·반장 위·해촉) ①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p> <p>②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통에 거주하는 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③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부턴 2년으로 한다. 다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임무)</p> <p>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관리</p> <p>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p> <p>제10조(운영실적의평가)</p> <p>①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구청장은 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당해 통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p> <p>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5월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p> <p>4. 스스로 사의를 원하는 경우</p> <p>5. 통·반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p> <p>6. 기타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활동이 극히 불량하여 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p> <p>⑤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의 직접선출을 거쳐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p> <p>—</p> <p>제7조(임무)</p> <p>3. -----통·반 현황관리</p> <p>5. 지역개발사업 -----.</p> <p>(삭제)</p>